약관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비과세 종합저축 특약』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**주요 변경내용 : (구)외환은행 약관 문구 정비 및 제7조(비과세 처리)의 내용을 (구)하나 기준으로 변경**
   (구)하나은행 약관을 (구)외환은행 약관 문구 정비하여 구행명 삭제 후 통합약관으로 개정

개정 전 (구.하나은행)	개정 후	비 고
제1조 (약관의 적용) (생략) **제2조 (가입대상자) ~ 제6조(예치한도 변경)** (생략) **제7조 (비과세처리)** 이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의 이자소득 등은 비과세처리하고 만료일 이후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한다. **제8조 (표시방법) ~ 제14조(예치한도 초과 입금제한에 따른 책임)** (생략)	**제1조 (약관의 적용)** **(좌동)** **제2조 (가입대상자) ~ 제6조(예치한도 변경)** **(좌동)** **제7조 (비과세처리)** 이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의 이자소득 등은 비과세처리하고 만료일 이후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. **제8조 (표시방법) ~ 제14조(예치한도 초과 입금제한에 따른 책임)** **(좌동)**	**(문구 정비)**

개정 전 (구.외환은행)	개정 후	비 고
제1조 (약관의 적용) 비과세종합저축(이하 "저축"이라 한다. 거래시 ~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**제2조 (가입대상자)** (생략) **제3조 (대상 예금 등)**	**제1조 (약관의 적용)** 비과세종합저축(이하 "저축"이라 한다. 거래시 ~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 **제2조 (가입대상자)** **(좌동)** **제3조 (대상 예금 등)**	**(구.하나 기준_ 문구 정비)** **(상동)**

은행이 취급하는 ~ 예금 등은 제외한다. 1. ~ 4. (생략)	은행이 취급하는 ~ 예금 등은 제외합니다. 1. ~ 4. **(좌동)**	
제4조 (예치한도) ① 이 저축으로 ~ (~다만, ~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② 이 저축에서 ~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입출금이 ~ 저축한도에 포함한다. ③ 동일한 계좌에서 ~ 한도로 정할 수 없다.	**제4조 (예치한도)** ① 이 저축으로 ~ (~다만, ~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차감한 금액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② 이 저축에서 ~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입출금이 ~ 저축한도에 포함합니다. ③ 동일한 계좌에서 ~ 한도로 정할 수 없습니다	**(상동)**
제5조 (예치한도 산정) ① 거치식 예금 등은 거래처가 가입한 예치원금으로 한다. ② 정액(정기)적립식 예금 등은 월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③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, 자유적립식 및 추가불입이 가능한 거치식예금 등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.	**제5조 (예치한도 산정)** ① 거치식 예금 등은 가입자가 가입한 예치원금으로 합니다. ② 정액(정기)적립식 예금 등은 월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. ③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, 자유적립식 및 추가불입이 가능한 거치식예금 등은 저축가입자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합니다.	**(상동)**
제6조 (예치한도 변경) 이 저축의 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.	**제6조 (예치한도 변경)** 이 저축의 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	**(상동)**
제7조 (비과세처리)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한다.	**제7조 (비과세처리)** 이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의 이자소득 등은 비과세 처리하고 만료일 이후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.	**(상동)**
제8조 (표시방법) 이 저축가입자는 신규 가입시 『비과세종합저축』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은행은 통장의 표지·내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『비과세종합저축』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	**제8조 (표시방법)** 이 저축가입자는 신규 가입시 『비과세종합저축』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은행은 통장의 표지·내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『비과세종합저축』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	**(상동)**
제9조 (적용이율) 이 저축으로 ~ 정한 바에 따른다.	**제9조 (적용이율)** 이 저축으로 ~ 정한 바에 따릅니다.	**(상동)**

제10조 (상속에 의한 특별중도해지) 거래처의 사망으로 ~ 적용한다. 다만, 신탁 ~ 정하는 바에 따른다.	**제10조 (상속에 의한 특별중도해지)** 저축가입자의 사망으로 ~ 적용합니다. 다만, 신탁 ~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	**(상동)**
제11조 (저축의 전환여부) 이 저축과 이 저축이 아닌 예금 등은 상호 전환할 수 없다.	**제11조 (저축의 전환여부)** 이 저축과 이 저축이 아닌 예금 등은 상호 전환할 수 없습니다.	**(상동)**
제12조 (중복가입자에 대한 처리)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~ 거래처가 ~ 거래처의 ~ 전환하여야 한다.	**제12조 (중복가입자에 대한 처리)**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~ 가입자가 ~ 가입자의 ~ 전환하여야 합니다.	**(상동)**
제13조 (명의변경 등)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하다.	**제13조 (명의변경 등)**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.	**(상동)**
제14조 (예치한도 초과 입금 제한에 따른 책임) 예치한도 초과로 ~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	**제14조(예치한도초과 입금 제한에 따른 책임)** 예치한도 초과로 ~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	